

 국토교통부	보도자료		
	배포일시	2021. 5. 20.(목) / 총 6매(본문2, 참고4)	
공항정책과 (가덕도신공항 건설추진전담반)	담당자	• 과장 이상현, 팀장 최종화, 사무관 김대현 • ☎ (044) 201-4328, 4316, 4317	
보도일시	2021년 5월 21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21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「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「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(약칭 가덕도신공항법)」 제정('21.03.16. 공포, '21.09.17. 시행)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
-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, 신공항 건설추진단의 구성·운영,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, 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정 지원,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.
- 「가덕도신공항법」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① (기본·실시계획) 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,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·보상계획 등의 서류(14종)를 규정
 - ② (건설추진단구성)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·운영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에 반영
 - ③ (주변개발예정지역)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, 방법, 지원대책을 규정
 - ④ (지역기업 우대) 공사·용역 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,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 기재부장관과 협의·결정토록 규정

⑤ (처분·명령) ㉮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, 공사중지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(5종) 처분기준(공항시설법 수준) 규정

⑥ (과징금 부과)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, 해당 과징금의 금액(시행한 공사금액 1/100), 부과방법(20일내 납부, 분할납부 금지등)을 규정

□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“이번 「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의 마련부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 대책,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,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”면서,

○ “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,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□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,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21일부터 2021년 6월 30까지(40일간)이며 관계부처 협의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9월 17일에 공포·시행될 예정이다.

○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“정책자료/법령 정보/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,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전담반/ 전화번호: 044-201-4317, 4318, 팩스: 044-201-5634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 전담반 최중화 서기관(☎ 044-201-4316), 김대현 사무관(☎ 044-201-431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**令第3조** 기본계획 변경 조건과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 시 절차를 규정

【기본계획 변경사항 및 고시방법】

法 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내용 중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변경 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고, 기본계획 수립·변경 시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

- 令** ① 기본계획 변경 대상으로 1.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면적 이상 증가, 2. 활주로의 신설 변경에 관한 사항, 3. 활주로의 길이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
- ②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14일 이상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
- ③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한 경우 해당 내용(건설계획, 변경사항 등)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

② **則 제2조** 국토부장관 외의 자가 사업시행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대한 절차, 내용 및 서식 등을 규정

【시행허가 절차 및 관련서식】

法 국토부장관 외의 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아야 하고, 허가할 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사업 관계 토지·시설을 국가에 귀속조건으로 허가 가능

- 令** ② 귀속 제외시설은 공항구역 내 1. 공항구역 내 공항시설로서(공항의 유지·보수, 항공기의 점검·정비를 위한 시설, 항공기 급유시설, 전력·통신시설, 소방·의료시설, 이용객 편의시설, 환경보호시설, 항공화물 창고시설, 헬기장에 있는 여객시설·화물처리시설 등 13종), 2. 공항구역 밖의 공항시설로 규정
- ① 허가신청서 첨부서류(5종)는 1. 사업계획서, 2. 사업예정지역의 위치·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, 3. 사업내용별 추정 사업비명세서, 4. 자금조달계획서, 5.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로 하고, 시행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의 관련서식을 규정

令第5조, 則 제3조 실시계획 수립·승인 절차 및 관련 서류, 서식 등을 규정

【실시계획 서류, 승인절차 및 관련서식】

法 사업시행자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, 그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, 자금조달계획, 사업기간 외에 ②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포함되어야 함 또한, 국토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③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준공확인 시 신고 및 관련사항 고시 생략이 가능함

- 令** ① 시행허가 후 3년 내 실시계획을 수립 국토부장관에게 승인 신청, 1년 범위 내 신청기간 연장 가능
- ② 1. 계획평면도 등 설계도서, 2. 토지등의 보상계획·이주대책, 3. 환경·교통영향평가서·협의결과, ... 12. 기술심의 필요 서류, 13. 인·허가 의제 협의 필요서류, 14. 건설관련 부대공사계획 <14종>
- ③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(변경승인) 신청, 승인(변경승인) 방법 및 관련 서식(신청서, 승인서)을 규정
- ④ 1. 건축법상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규모(건축규모 1/10 이하) 변경, 2. 건설예정지역의 5천㎡ 이하 축소, 3. 총사업비 10/100 미만의 변경, 4. 1년 이하 사업기간의 변경, 5. 설비위치 변경 <5종>

4 **令第6조** 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(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km의 범위)의 지정범위, 방법, 지원대책을 규정

【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】

法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km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,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,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^①대통령령으로 정함.

令 ^① 지정범위 : **1.**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정한 구역, **2.** 「공항소음방지법」에 따른 소음대책지역, **3.**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지정방법 :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,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(제8조)」에 따르도록 함
지원대책 : 주변개발예정지역 주거여건 개선,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함

令第7조 가덕도신공항 건립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, 건설관련 주요업무를 추진단이 수행하며 추진단의 구성·운영은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에 따르도록 규정

* 현재 임시조직으로 ‘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 전담반’을 운영 중(‘21.3.9~)

【건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】

法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고,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^①대통령령으로 정함

令 ^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,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도록 함 (☞ 조직 구성은 국토부 직제에 반영, 행안부 협의)

令第8조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

【건설사업 재정지원 범위】

法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^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

令 ^①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

- ⑦ **令 제9조**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부여하는 산업단지·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(5종)과 이주대책 업무 대행 등 지원사항(2종)을 규정

【민간자본유치사업자 지원 사항】

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, 그 밖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

令 ① 1. 관광단지개발사업, 2. 도시개발사업, 3. 산업단지개발사업, 4. 주택건설·대지조성사업, 5. 택지개발사업
② 1. 주민이주대책·손실보상 업무의 대행, 2. 민간투자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

令 제10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또는 인근 지자체에 있는 지역 기업 우대 가능한 공사·용역 등의 계약대상을 규정하고, 우대 기준은 개별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 기재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

【지역기업 우대 대상 및 기준】

法 사업시행자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·물품·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,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음

令 ① 1. 공사계약: 종합·전문공사(건설산업기본법), 전기공사(전기공사업법), 소방시설공사(소방시설공사업법) 등
2. 물품 제조·구매 계약: 공사시행을 위한 기자재·기계류, 사무기기, 전산장비 등의 제조·구매 계약
3. 용역계약: 엔지니어링활동(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), 건축물의 설계(건축사법), 공사감리 용역계약
②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·행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

令 제11조, 則 제5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의 처리절차와,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등 관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, 공사중지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(5종) 처분기준을 규정

【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】

·1

令 제12조, 13조, 14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, 과징금 부과(사전통지, 20일 내 납부, 분할납부 금지 등) 및 징수방법을 규정

【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】

法 위반행위에 따른 허가·승인의 효력정지, 공사중지 명령의 처분이 이용자 불편 또는 공익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(독촉)·징수할 수 있고,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^①대통령령으로 정함.

- 令** ^① 1. (부과방법)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사전 서면으로 통지
2. (납부방법) 과징금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 수납기관에 과징금 납부, 3. 분할 납부 금지
4. (독촉·징수) 납부기한 경과 7일내 독촉장 발급, 10일내 미납시 국세체납 처분 예에 따라 강제징수 가능

<별 표>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

1. 승인없이 실시계획 수립·승인사항 변경 : 시행한 공사금액 1/100 금액(최대 5억원)
2. 수립·승인된 실시계획에 위반한 시행 : 시행한 공사금액 1/100 금액(최대 5억원)
3. (1/2 감액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(3종)
4. (1/2 증액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,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(3종)